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명확화(안 제2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‘외화획득용 제품’의 의미가 제한적이고 모호하여 국내에서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‘외화획득용 제품’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‘외화획득용 제품’에 포함되도록 명시(안 제2조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“외화획득용 제품”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수출지원 기여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(안 제3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무역에 포함되는 ‘용역의 범위’에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원활한 수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대외무역법령상 ‘용역의 범위’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‘용역의 범위’를 준용하여 확대  
\*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~세분류를 혼용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분류로 범위를 설정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현행 ‘용역의 범위’를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원활한 수출지원 기여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